

제1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3. 12. 15.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12월 15일(금) 14:00~17:43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제1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217호 『OOOOOOOO(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금감원의 '고의'처분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감원은 저가수주 후 경영진의 원가차감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한 근거로 수주단계에서 원가율을 임의로 변경한 저가수주임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Global Sourcing 등을 통해 4% 절감이 달성되었으므로 임의차감이 아니고, 설사 금감원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예상원가율이 100% 이하이므로 저가수주도 아님. 또한 금감원은 경영진의 근거 없는 원가차감 지시도 근거로서 주장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영진이 원가절감을 찾아보라고 했던 것은 원가절감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이는 석탄화력과 원자력 분야에서 당사가 Global top이고,

제조기술이나 원가경쟁력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임. 또한 당사 보너스 시스템의 특성상 사업계획을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영진은 프로젝트 담당 전문가가 내부검증을 통해 원가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처럼 경영진은 원가절감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이를 원가임의차감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당함. 금감원은 '고의' 판단의 또다른 근거로서 월간프로젝트 관리회의에서 경영진에게 관련 리스크를 보고했는데도 예상되는 공사손실을 미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월간프로젝트 관리회의는 사업부서의 실무진 회의로서, 경영진이 참여하거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회의가 아님. 금감원은 또 발주처와의 회의시 손실발생액을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발주처에게 손실예상액을 공유한 것은 사실이나, 동 손실예상액은 발주처 부담이고, 계약상 자회사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언급했음. 또한 2020년 2월 경영실적회의에서 경영진에게 리스크를 보고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경영실적회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회의도 아니고, 결산을 논하는 자리도 아니기에 경영실적회의에서 논하는 자료는 결산과 관련된 재무회계 자료가 아니고, 성과관리를 위한 관리회계 영역이고, 내부토의용 자료에 불과함. 다음은 자금조달을 위해 손실을 은폐했는지 여부인데 프로젝트 손실이 자회사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음. 2019년말 재무제표 기준에 금감원 지적금액을 임의로 반영해도 신용평가지 사용되는 주요 재무항목 평가 Range가 변동이 없기에 신용등급 변동이 없음. 여기에서 한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2019

년말 결산숫자와 상관없이 2020년 3월2일에 감사인에게 제출할 자금조달 계획 수립시에는 자회사 잠재 리스크를 반영해서 조달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임. 즉, 자회사 잠재리스크 반영 여부가 당사의 신용등급과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자금조달계획 수립과 충분히 조달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본 지적금액을 회계처리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임. 다음은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약정 회피를 위한 손실 은폐 주장인데 구조조정 실행을 위해서는 손실을 더 많이 부각시켜야지 줄이거나 감출 이유도 전혀 없음. 또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 관련하여 긴급자금을 받은 것은 손실규모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금융경색으로 자금흐름이 막혀서 받은 것임. 산업은행 보도자료에서도 똑같이 이야기 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자회사 매각을 위한 손실 은폐 주장임. 매각과정에서 매수자는 정밀실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출 수가 없고, 설사 리스크를 감추어도 계약상 진술보장 때문에 나중에 대규모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됨. 그래서 매각과정에서 손실을 은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다음은 '고의'와 자료제출 감리방해와 관련하여 법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겠음. 외감법령상 '고의' 처분은 법리적 측면에서 부당함. 첫째, 본 건은 총공사예정원가의 추정 및 반영시기 등 회계추정에 관한 이슈(issue)로서 설령 회계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가공의 자산계상과 부채누락으로서 '고의' 판단조항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됨. 둘째, 많은 수주산업 회사들이 금감원의 테마감리를 받았으며, 거의 대부분의 지적 동기는 '과실' 또는 '중과실'이었음. 본 건도 장기공사계약에 총공사예정원가 추정에 관한 수주산업의

쟁점임을 고려하면 명백한 위법동기가 발견된 매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고의'로 조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격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셋째, 조치양정기준에 의하면 지배·종속관계의 성격 및 정도, 종속회사의 위법동기, 종속회사의 종류 및 설립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본 건에서 자회사가 해외에 설립되었다는 점과 본사가 종속회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었다는 점 등 현지 회사에 대해서 통상적인 관리감독조차 쉽지 않았다는 여러 현실적인 사정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어서 자료제출 거부 및 감리 방해에 대해 설명드리겠음. 첫 번째로 과거 5년 동안 회계감리과정에서 자료제출 거부로 조치 받은 사례는 단 1건으로 파악되며, 해당 건은 재무제표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건으로 보임. 3년간 성실하게 감리절차에 임한 회사로서는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그야말로 정말 억울함. 두 번째, 본 건 감리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임. 금감원에서 혐의의 근거로 제시한 입찰준비자료, 월간프로젝트관리회의 등 자료는 모두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회사 고유의 자료임.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감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제출자료 일부가 금감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료제출 거부로 지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함. 세 번째, 자료제출 거부로 조치하는 것은 침익적 처분인데, 침익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및 법률해석을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임. 즉, 자료제출 거부가 성립하려면 법령상 당연히 구비되어야 하는 자료이거나 아니면 회사가 동 자료를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조사대상회사의 명백한 자료 소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금감원이 요청한 자료는 법령상 구비해야 하는 자료도 아니고, 회사가 작성 및 보관하고 있던 자료도 아니어서 이에 해당되지 않음. 네 번째, 허위진술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에 불과하거나 현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 허위진술은 없었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임. 다섯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주관적 성립요건인 감리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임. 금감원이 문제 삼는 자료 등은 모두 회사가 자진해서 제출한 것으로 회사의 감리방해 의도가 있었다면 이러한 자료를 처음부터 자진해서 제출하지도 않았을 것임. 여섯 번째, 본 건 조사는 비례의 원칙 및 적법절차 준수에 굉장한 의문이 있다는 점임. 행정조사기본법 및 외감법에서 조사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의 경우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자료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동일 쟁점에 대한 중복조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음. 그리고 출석요구서 없이 현장에서 직원을 바로 소환하거나 변호인 입회가 제지당하는 등 방어권 보장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마지막으로 별도재무제표 지적사항인 종속회사 투자주식 손상 이슈(issue)의 경우에는 아무런 조사가 없다가 최종질문서 단계에서 갑자기 제기되어서 회사로서는 의견진술 기회를 적절하게 보장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 (진술인) 이제부터 별도재무제표상 투자주식 감액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일단, 발주처 합의는 2020년도에 발생했고 2019년도에는 계약상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자회사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고 그래서 2019년말 별도재무제표상 자회사 주식 및 채권 감액도 없는 것이 맞음. 금감원 주장대로 2019년 자회사 손실을 인정한다 해도 별도상 감액은 발생하지 않음. 별도재무제표상 투자주식 평가시 4가지 항목을 고려해야 됨. 첫째는 사용가치인 현금흐름할인법과 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함. 둘째, 사용가치는 자회사의 예상되는 모든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Discount 해야 되며, 미래현금흐름에는 사업계획상 현금흐름뿐만 아니라 당사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Claim, Escalation 금액도 포함되어야 함. 셋째, 2019년말 자회사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는 2019년말 현재 사업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추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2020년 3월 이후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한 Lock-Down, 당사의 긴급자금 수령 등 사후적인 사건을 이유로 2019년말 사업계획을 Challenge 하는 것은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과거의 오류로 보지 않는다.”는 회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넷째는 2019년말에 수립한 자회사 사업계획이 2019년말 기준으로 타당하고 보수적으로 추정되었음을 컨설팅 회사를 통해 검증 받았으며, 보수적이고 충분히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음. 또한, Valuation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목표수익률, 현재가치 할인율인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그다음에 영구성장률 이 모두 경쟁업체 대비 낮은 수준임을 검증했고, 따라서 이 또한 보수적인 추정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음. 위에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2019년말 자회사 주

식을 평가하면 별도재무제표상 자회사 주식 및 채권은 전부 감액이 발생하지 않음. 투자주식 감액을 인정한다 해도 적어도 명백하게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지 않았고 절감했다고 입증 가능한 항목들만 제외할 경우 지적금액은 더 적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봄. 첫 번째, Tax Risk는 실제 발생하지도 않았고 소멸된 리스크임. 저희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고, 돈이 실제로 나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적금액에서 반드시 차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두 번째, 하도업체와의 계약은 확정계약이므로 계약상 당사의 지급의무가 없고 실제로 나간 금액도 거의 없기 때문에 Claim Risk도 지적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세 번째로 OE 원가절감 항목도 약 70%가 이미 원가절감 실현되었고, 나머지도 프로젝트 종료시 현장에서 사용한 장비 매각 등으로 실현이 확실한 항목이기 때문에 지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결론은 명백하게 입증 가능한 금액을 제외하면 지적금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중요성 4배 미만임. 중요성 기준 4배 이하이고 회계추정/판단 관련 사항은 통상 '과실'로 처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다음으로 동 프로젝트는 자회사 이슈(issue)이고 자회사는 독립적 경영을 하기 때문에 모회사의 책임은 제한적임을 설명 드리겠음. 첫 번째, 자회사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은 자회사 경영진에 있음. 자회사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있음이 표로 표시되어 있고, 재무제표 승인 책임도 자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음이 재무제표 공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 또한,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의사결정도 자회사의 경영진에 있음. 두 번째로 자회

사는 고정사업장 리스크로 인해 본사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음. 이를 어기면 현지에서 엄청난 세금이 추정되기 때문에 당사는 자회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음.

- ▶ (진술인) 여기까지 자회사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부터 도하 및 서남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소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하는 두 가지가 핵심 이슈(issue)인데, 첫째는 금감원에서 지적하신 2018년도부터 논의되었던 리스크는 준공 이전의 리스크이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준공공사 이전에 모두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O&M 프로젝트와 관련된 리스크 금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테스트가 필요한데, 그 테스트가 가능했던 시점은 2020년 3월이라는 것임. 그전에는 Full Operation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가 불가능했고, 따라서 O&M 관련한 정확한 리스크를 2020년 3월 이전에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임. 서남해 관련해서는 첫째, 당사가 발주처에게 준 약속서만으로는 계약상 의무와 손실금액이 확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사는 블레이드 파손 원인을 태풍으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 서남해 이전에 수행한 다수의 풍력프로젝트에서 파손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고, 매우 강한 수준의 태풍 링링이 지나간 이후에 파손되었기 때문임. 풍력은 국가중점정책 사업으로 사고원인에 대한 정확한 보고 및 법적 후속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조사가 필수적임. 그렇기에 당사의 계약의무 발생시점은 약속서 제공시점으로 보편안 되고, 외부평가기관의 조사결과 공식적으로 제출된

2020년 6월로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확약서만으로는 다른 이해관계자인 정부나 하도급업체,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계약상의무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임. 2020년 1월에 당사가 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준공승인을 받기 위해 의사결정한 것이고 당사가 발주처에게 확약서를 제공해야만 하는 계약상 의무는 2019년도에 존재하지 않았음. 즉, 확약서 작성은 2020년도에 발생한 독립된 사건이고, 이를 2019년 말 현재 당사의 파손에 대한 계약상 의무와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설사 일부 회계상 이슈(issue)가 있다하더라도 회계추정 및 판단의 이슈(issue)이고 중요성 금액 1배 수준이기 때문에 '과실' 이하 처분과 벌과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진술인) 前대표이사로 근무했던 000임. 본 건 관련하여 저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선처를 부탁드리려고 함. 당시 본사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프로젝트가 수 백 개에 이르고 있었고, 각각의 프로젝트는 담당하는 사업조직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재무관리 부문의 CFO 및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관여 및 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자회사 프로젝트인 경우 제가 회사에 전입하기 전에 이미 수주가 되어 공사 중에 있었으며 특히 자회사가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자회사 경영진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본사 경영진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여 및 지시를 할 수 없음. 저는 2019년도 실적악화 및 이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한 도의적 책임으로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는데, 특정 프로젝트의 일부 손실만을 미반영할 동

기는 전혀 없었음. 본 과징금은 현재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사료되는 등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시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원가절감목표(이하 OE Target)만큼 예정원가를 감소시킨 것은 맞는지?

▶ (진술인) 다른 프로젝트에서 똑같이 이 원가절감가능예산을 예산집계할 때 반영한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업무절차임. 다만, OE를 무조건 처음부터 차감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한 항목은 처음부터 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 초기에 OE 활동들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차감하지 않고 실현된 것을 나중에 차감하는 그런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를 함.

○ (위원) 일부 원가항목들을 보니까 6.3%를 일괄 감액한 항목들도 꽤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 (진술인) 그 근거가 무엇이나 하면 공급업체에, 외주업체에 대한 다변화를 통해서 그 금액을 줄이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Activity code 중에 수주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서 그 비율만큼 차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임의로 차감한 것이 아님.

○ (위원) Activity code가 실무자들의 재량으로 생성/분할/단체 발생하고 이것은 관리용이지, 결산하고 상관없으니 총액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금감원에는

언제 의사소통이 되었는지?

- ▶ (진술인) 처음에 Activity code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회사 측과 금감원의 입장이 많이 달랐던 것 같음. 금감원에서는 Activity code가 바로 결산으로 연결되는, ERP상에서 그대로 연결되어서 재무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도구로 생각을 했음. 그런데 회사는 Activity code제도 도입 이후에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로 정착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Activity code를 가지고 결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량 개념으로 총공사예정원가의 개념을 가지고 큰 카테고리로서 해서 결산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Activity code에 대해서는 회사가 개인에 대해서 어떤 통일된 시스템이나 체계에 있어서 매뉴얼을 주고 그것대로 관리하고 변동이력은 이렇게 기재하도록 강제한 적이 없음. 그러다보니까 그 과정을 좁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현지에서 가지고 있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제출이 조금 늦게 된 측면이 있다는 것임.
- (위원) 상당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진행상황을 자회사에서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세부적인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와 닿지 않는데 입찰을 한 이후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해서는 그냥 현지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인지?
- ▶ (진술인) 그렇지 않음. 저희는 구체적으로 Operation조직과 Finance조직이 나뉘어져 있음. CEO 부문(part)이 Operation을 담당하고 있고 CFO가 Finance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

질적으로 사업 관리는 Operation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 결정할 사항은 없지만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같이 모니터링도 하고 협의하고, 협의하는 진행과정은 당연히 갖고 있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첫번째로, 자회사 프로젝트 관련된 그룹감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음. 종속법인에 대한 그룹감사는 부문 감사인을 활용하여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9년에 대한 재무제표 및 내부통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설립 이후 계속감사인으로서 회사 및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대하여 그룹감사인은 감사기준서 600에 따른 감사업무 유형 결정 기준에서 양적 고려요소인 15%보다 훨씬 보수적인 5%를 적용하였음. 질적으로도 보증의 성격에 있어서 모든 공사에 제공되는 공사이행보증의 성격으로 파악되었고 공사이행보증으로 인한 의무가 발생한 것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Scope out하였음.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해당 부문에 대하여 그룹수준의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바, 그룹감사인이 최초 감사를 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부문감사인에게 그룹감사지시서를 발송하였고 회신 받은 내용을 검토하였음. 이처럼 감사인은 양적기준을 감사기준보다 더 보수적으로 적용하였고 질적으로도 보증의 성격성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부문감사인에게 그룹감사지시서를 송부하여 회신내용을 검토하였으므로 사실상 Scope in과 유사한 절차까지 수행한 것임. 금감원은 회계감사실무지침에 따라 투입법을 적용하는 종속회사의 경우에 모두 유의적인 부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음. 그러나 동 실무지침은 회계추정치가 유의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전문성의 관점에서 동 실무지침의 적용 여부는 감사인의 전문적인 판단사항이며 모든 종속회사를 특별히 유의해서 보라는 취지는 아님. 2019년에도 재무적 기준이 여전히 5% 미만이었지만 주요 공사가 3년차에 접어들었고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매출 및 매출채권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서 Scope in으로 판단하였음. 따라서 그룹감사인은 부문감사인에게 그룹감사지시서를 발송하여 특정감사절차를 지시하고 그 회신내용을 검토하였음. 그러나 금감원은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자료인 MPR보고서 자체를 확인하지 못해서 공사지연 및 추가원가발생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금감원의 주장은 감사절차의 목적을 오해한 것임. 부문감사인에게 MPR보고서 자체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공정진행률을 확인하였으므로 진행매출 과대계상 여부에 대한 절차를 이행한 것임. 그리고 지연보상금 추정의 적절성에 대해서 금감원은 프로젝트가 1년 이상 지연되어 지연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관련 검토를 미

수행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문감사인은 지연 보상금 지급가능성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실제로 2019년에는 원가진행률이 상승하여 잔여기간 동안에 100% 달성 가능한 수준이었음. 또한 금감원은 프로젝트간 원가 전용 여부에 대한 전산감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부문감사인은 IT 설정 및 통제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시한 감사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음. 자회사는 원가 전용을 방지하는 자동통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부문감사인은 내부통제 감사과정에서 이를 테스트하였음. 금감원은 그룹감사인의 분석적 절차가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룹감사인은 부문감사인을 활용해서 부문수준의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기준보다 더 강화된 절차를 수행한 것임. 2019년도에는 유의적인 부문으로 분류하여 부문감사인이 부문수준의 분석적 절차를 포함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기준에 부합되게 수행한 것임. 이어서 자회사 프로젝트에 관련된 회계처리사항 및 지적금액에 대한 내용임. 금감원에서 지적한 오류금액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총공사예정원가의 증액 부분만을 반영한 것으로 회계기준서에 부합되지는 않음. 발주처에 계약범위를 초과한 설계변경 및 물가상승에 따른 변동대가 등 계약금액의 증액에 해당하는 부분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별도재무제표상의 지적금액 관련하여, 금감원이 산정한 주식 및 채권의 손상금액은 회계기준서에 따른 회수가능금액이 아님. 이번에는 도하 및 서남해 프로젝트 관련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음. 감사인은 2019년도 감사시 총공사예정원가 감사대상 프로젝트 선정시에 위험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5가지 시

나리오를 설계하였고, 이에 따라 Tier를 구분해서 Tier 1에서는 상세하게 5가지의 절차를 수행하고, Tier 2에서는 유사 프로젝트의 총공사예정원가의 비율과 비교하는 등 절차를 수행하였음. 이를 통해서 총매출액의 87%를 커버(cover)하였음. 문제가 된 도하 담수화 프로젝트는 Tier 1이나 Tier 2에도 선정이 되지 않았음. 서남해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Tier 2에 해당되어서 관련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음. 서남해 프로젝트의 금감원 지적금액은 감사의견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님. 그리고 금감원이 발표한 수주산업 감사 시사점을 반영하여 감사절차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음. 앞선 내용을 감안하시어 감경할 필요성은 없는지도 살펴봐 주시고 선처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 (위원) 2017년, 2018년 감사지시서 발송 및 회수 내역이 조서화가 되어 있는지?

▶ (진술인) 조서화는 안 되어 있음. 2017년도, 2018년도에 설명 드린 것처럼 회사의 자산규모나 매출규모가 연결채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서보다도 더 강화된 판단기준이라든지 질적인 기준까지 고려했을 때도 이 회사는 Scope out이었음. 그래서 그 부분은 조서화가 되지 않았던 상태이고 관련된 E-mail 회신 내용은 금감원에 既 제출 되었음.

○ (위원) 금감원은 자회사가 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가 제시한 미래 현금흐름의 신뢰성이 매우 낮아서 사용 가치는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부분에 대

한 감사인의 의견은 어떠한지?

- ▶ (진술인) 당시의 상황이나 그 당시에 판단을 한다면, 다른 프로젝트도 수익이 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손실이 난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
- (위원) 이 건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규모가 상당히 큰 프로젝트에 속한다고 되어 있어서, 단순히 그해에 나와 있는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총 프로젝트 규모나 이런 것들을 다 보셔서 Scope in할지 Scope out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
- ▶ (진술인) 회사는 EPC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회사 차원에서는 처음도 아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상황들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음. 다만, 수주산업 같은 경우 여러 해에 걸쳐서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보기 위해서 수주 규모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증, 이런 것들을 보는데 공사 이행보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발전소 관련한 공사뿐만 아니라 문제된 적이 한번도 없고, 지금까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그런 공사이행보증을 규모 자체가 저희들의 Scope in/out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이 됨.
- (위원) Scope in/out에서 감사기준서에 있는 기준보다 더 보

수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사업보고서를 보면 주요 종속회사 중의 하나로 보임.

- ▶ (진술인) Scope in이냐, out이냐는 것을 판단할 때 양적인 기준과 질적인 기준을 파악해서 한 것임.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프로젝트 두 개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재무적으로 양적인 부분이나 질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가 아님.
- (위원) 목표공정진행률과 실제 공정진행률을 비교하라는 지시는 안 하셨는지?

▶ (진술인) 공사 지연 여부를 파악하려고 별도의 3개 절차를 검토하도록 부문감사인에게 지시를 했음. 예상납기일에 대한 검토라든가, 공기 연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실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고 혹시라도 공정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세 가지의 접근 (approach)을 통해서 공사 지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부문감사인에게 지시를 했었고 그 답변 또한 특이한 사항은 없는 등 관련된 절차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음.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의 폐회를 선언함.